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2. 11 선고 2015가합516408 판결 [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
청구의소]

전 문

원고 신용보증기금

피고 1. A 주식회사

2. B

3. 주식회사 이넥트론

4. C

변론 종결 2015. 11. 11.

판결 선고 2015. 12. 11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A 주식회사, B은 연대하여 276,407,502원 및 그 중 275,197,408원에 대하여 2014. 12. 24.부터 2015. 9. 18.까지는 연 12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

나. 피고 주식회사 이넥트론은 피고 A 주식회사와 합동하여 275,197,408원 및 그 중 96,163,353원에 대하여는 2014. 10. 15.부터, 51,708,900원에 대하여는 2014. 11. 1.부터, 59,500,000원에 대하여는 2014. 11. 15.부터, 52,458,855원에 대하여는 2014. 11. 28.부터, 15,366,300원에 대하여는 2014. 12. 15.부터 각 2015. 9. 18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
각 지급하라.

2. 가. 피고 C과 피고 주식회사 이넥트론 사이에 별지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. 9. 19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이넥트론에게 별지 3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, 대한민국(소관 : 대전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)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라.

3.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, B, 주식회사 이넥트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2항 및 원고에게, (1) 피고 A 주식회사, B은 연대하여 276,407,502원 및 그 중 275,197,408원에 대하여 2014. 12. 24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2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 (2) 피고 주식회사 이넥트론은 피고 A 주식회사와 합동하여 275,197,408원 및 그 중 96,163,353원에 대하여는 2014. 10. 15.부터, 51,708,900원에 대하여는 2014. 11. 1.부터, 59,500,000원에 대하여는 2014. 11. 15.부터, 52,458,855원에 대하여는 2014. 11. 28.부터, 15,366,300원에 대하여는 2014. 12. 15.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가.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나. 다만, 피고 A 주식회사, B, 주식회사 이넥트론에 대한 각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 제26553호, 2015.

10. 1. 시행)에 따라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연 15%의 비율로 산정하여야 하는바, 위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중 이를 초과한 부분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.

[인정근거]

가.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, B, C 사이 : 자백간주(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)

나.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이넥트론 사이 : 갑 제1 내지 13호증(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적용 법조

가. 피고 A 주식회사, B, C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(자백간주 판결)

나. 피고 주식회사 이넥트론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재판장판사이태수

판사손영언

판사이현석

별지